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

2006. 3

보건복지부

1. 업무개요

가. 목적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성 필요로 함에 따라 이들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케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함.

나. 근거법령

- 의료인 : 의료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의료기사등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다. 연혁

- '81. 12. 31 : 의료인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82. 4. 2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4. 1. 7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료법 개정.시행 '94. 7. 8)
- '95. 1. 5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의료기사법 전문개정.시행 '95. 10. 6)
- '96. 10. 31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 50만원
- '97. 8. 4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법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70만원
 - 조산사.간호사 : 50만원
 -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안마사 : 20만원
- '99. 2. 8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을 협회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미이수시에 부과하던 과태료규정 폐지

※ 회원강제가입제도 폐지

○ '99. 8. 3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 : 10시간→8시간

○ 2000. 6. 30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1차 위반시 :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2000. 10. 21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8시간

라. 보수교육 주관

○ 의료인 등 : 의사회 등 각 중앙회

○ 의료기사 등 :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현재 의료기사협회 등 단체)

2. 업무처리 절차

가. 의료인 등

○ 보수교육계획서 제출(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3)

- 당해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3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

-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예정인원,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예정시간 및 일자, 장소, 강사의 소속.성명,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등을 포함

○ 보수교육 실시(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교육시간 : 매년 1회이상(연간 8시간 이상) 실시
-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 실시기관 : 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

○ 보수교육실적 보고(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3)

-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
- 보수교육대상자수 및 이수자수, 면제자수, 미이수자수 및 명단 등을 포함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등을 포함

○ 미이수자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침)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70만원
 - 조산사.간호사 : 50만원
 -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 20만원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1차 위반시 : 경고
 -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는 의료인 등도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될 것임)

나. 의료기사 등

- 보수교육 위탁기관 신청공고(보건복지부)
 - 관보게재
- 의료기사등 보수교육 위탁기관 신청(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 보수교육의 대상.교과과정.실시방법 및 보수교육이수 인정기준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
- 신청기관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고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관보게재
- 보수교육 실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
 - 교육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실시
 - 교육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 보수교육실적 보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 보수교육 실시 후 2월 이내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
 - 보수교육대상자수, 이수자수, 면제자수, 미이수자수 및 명단 등을 포함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등을 포함
- 미이수자 행정처분(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1차 위반시 : 경고
 - 1차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 ※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를 거침

3. 보수교육 세부내용

가. 보수교육 대상자

- 의료인 등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는 의료법을 준용하여 보수교육 실시(각 시도 관할)
- 의료기사 등 :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공히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수교육대상자가 아님

나. 보수교육 면제대상

- 의료인
 -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군 복무중인 자
 - 전공의
 - 대학원 재학생
 -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의료기사 등

- 군 복무중인 자
-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다. 중앙회(단체) 등의 기능

○ 의료인 등

-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실시
- 당해연도 보수교육계획서 3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실시
-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수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연간 8시간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 후 2월 이내에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4. 행정사항

가. 시도

- 시.도지사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구사 및 안마사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나. 중앙회(단체)

- 2003년도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은 자원 65540-839(2000. 4. 21)호로 지정.고시한 사항으로 2003년도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간주

- 공중보건 의사(치과의사 포함)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도지사 주관으로 공중보건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음의 교육과정 중 한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의료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 주관 신규 편입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직무교육(4~5일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공중보건 의사 시·도 교육자과정(3일간) 및 시·군·구 교육자과정(2일간) 교육
 - 시·도지사 주관 공중보건 의사 보수교육(2일간)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대상자 전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사실을 홍보하도록 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처분됨을 소속회원에게 미리 서신이나 신문 등에 게재하여 알려줄 것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 및 단체는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자, 면제자 등의 명단을 철저히 관리(전산화) 할 것
- 보수교육이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타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 회원가입유도와 보수교육을 연계시키지 말 것
- 각 중앙회(단체)는 3월말까지 보수교육계획서를, 4월말(의료기사 등은 3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기일 엄수하여 보건복지부(소관팀)에 제출할 것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보수교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면제 신청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면허종별		④면허번호	제 호
	⑤소속기관			
	⑥기관소재지			
⑦면제사유				
<p>년도 차 의료인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주실 것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중앙회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관계증빙자료				없 음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제 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수교육실시 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교육예정 일자	소요예산	피교육자경비 부담액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제 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자수	보수교육 대상자수	보수교육 이수자수	보수교육 면제자수	보수교육 미이수자수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1.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2. 변경사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제 목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의료기사등)

보수교육실시기관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자수	보수교육 대상자수	보수교육 이수자수	보수교육 면제자수	보수교육 미이수자수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를 기재함				
1.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2. 변경사유				

관 련 법 률

【의료법】

제28조(협조의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 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 12. 13)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7. 12. 13)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81. 12. 31)

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81. 12. 31, '87. 11. 28, '94. 1 7, '97. 12. 13, 2000. 1. 12)

1. ~6. (생 략)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④ (생 략)

제71조(과태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보수교육) ①중앙회는 법 제2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개정 '90. 1. 9, 2000. 10. 21)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 1. 9)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90. 1. 9, '96. 12. 3)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학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 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 12. 31)

제21조의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12. 3)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 8. 20)

제21조의4(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82. 12. 31)

제21조의5(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3. 8. 20)

제61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97. 8. 4)

(의료법시행규칙)(별표 6)(개정 2000. 10. 21)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근거법령
2. 의료인이 법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나. 조산사.간호사 다.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70 50 20	법 제71조제3항제2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97. 12. 13)

제22조(자격의 정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개정 '97. 12. 31)

1. ~ 2. (생략)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생략)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99. 2.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업무위탁)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2. 해당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 6. 3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99. 8. 3)

②삭 제('98. 8. 13)

③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삭 제('99. 8. 13)

3.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13)

⑤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교과과정.실시방법 및 보수교육이수 인정기준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 8. 13)

제19조(보수교육의 실적보고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실시 후 2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13)

②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 8. 13)

제21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8. 13)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3.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인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8)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53조제1항제7호	.1차 위반시: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자격정지 7일

다.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제1항제3호	.1차 위반시: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자격정지 7일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소관]

관리기관	소관 보수교육	비고
의료자원팀	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의료정책팀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약품정책팀	약사	
한방정책팀	한의사, 한약사	
구강보건팀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시.도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	